

# 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1187호      2021. 8. 27.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140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144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5
- 삼척시 고시 제145호 도시관리계획(시설 : 체육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8

##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950호 제229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 9
- 삼척시 공고 제955호 도계 미인폭포 탐방로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열람(공람) 공고 ----- 11
- 삼척시 공고 제968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14
- 삼척시 공고 제969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20
- 삼척시 공고 제972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23
- 삼척시 공고 제975호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5
- 삼척시 근덕면 공고 제22호 도로의 지정 공고 ----- 30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홍보실 (전화 : 570-3229,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21 -140호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8. 24.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강원도 삼척시 마달1길 165 (마달동) 외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마달동 66	강원도 삼척시 마달1길 165 (마달동)	20210824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활용 (마달길분기)
2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추동리 316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추동1길 239	20210824	기존건물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일련번호방식)
3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 759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두타로 1966-19	20210824	건물신축	20090626	지형지물(두타산) 명칭활용
4	강원도 삼척시 교동 377-1	강원도 삼척시 새천년도로 469-1 (교동)	20210824	건물신축	20090626	동지역해안도로 (기존도로명)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비고
		도로명주소	계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마달동 66	강원도 삼척시 마달1길 165 (마달동)	20210824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활용(마달길분기)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추동리 316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추동1길 239	20210824	기존건물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일련번호방식)	
부여	3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 759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두타로 1966-19	20210824	건물신축	20090626	지형지물(두타산)명칭활용	
부여	4	강원도 삼척시 교동 377-1	강원도 삼척시 세천년도로 469-1 (교동)	20210824	건물신축	20090626	동지역해안도로(기존도로명)	

삼척시 고시 제2021 - 144호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대장 말소 등의 사유로 폐지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8. 27.

##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841-6 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0570-394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aga.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841-6	폐지	20210827	멸실	20090626	구7번국도 연결구간으로 기존도로명활용
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부남길 25-8	폐지	20210827	건축물대장 말소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길 29	폐지	20210827	건축물대장 말소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미근로 1781	폐지	20210827	건축물대장 말소	20090626	행정구역 (미로,노곡,근덕) 연결구간시종점 지역명칭활용 (미로,근덕)
5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2길 31-6	폐지	20210827	건축물대장 말소	20090626	일련번호방식행정 구역명사용 (덕산길분기)
6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841-8	폐지	20210827	건축물대장 말소	20090626	구7번국도 연결구간으로 기존도로명활용
7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674-14	폐지	20210827	건축물대장 말소	20090626	구7번국도 연결구간으로 기존도로명활용
8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674-12	폐지	20210827	건축물대장 말소	20090626	구7번국도 연결구간으로 기존도로명활용

도로명주소 폐지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주소	도로명주소					
		계	8건					
폐지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841-6		20210827	명실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 기존도로명 활용	주택
폐지	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부남길 25-8		20210827	건축물대장 말소	20090626	행정구역명 사용	주택
폐지	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길 29		20210827	건축물대장 말소	20090626	행정구역명 사용	공가
폐지	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미근로 1781		20210827	건축물대장 말소	20090626	행정구역(미로,노곡,근덕) 연결구간시 종점지역명칭 활용 (미로,근덕)	주택
폐지	5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신2길 31-6		20210827	건축물대장 말소	20090626	임원번호방식 행정 구역명 사용 (덕산길분기)	주택
폐지	6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841-8		20210827	건축물대장 말소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 기존도로명 활용	주택
폐지	7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674-14		20210827	건축물대장 말소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 기존도로명 활용	주택
폐지	8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674-12		20210827	건축물대장 말소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 기존도로명 활용	연륙제건설

삼척시 고시 제2021-145호

# 도시관리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교동 산26-2번지 일원 체육시설 신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과 그 내용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7일

삼척시장

가. 계획취지

- 「국토계획법」 제2항제4호 다목의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나.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조서

1) 체육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	삼척생활문화 체육시설	생활 체육시설	교동 산26-2번지 일원	-	증) 91,397	91,397	-	자연 녹지지역

■ 체육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3	삼척생활문화 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시설 신설</li> <li>• 위치: 교동 산26-2번지 일원</li> <li>• 면적: 91,397㎡</li> </ul>	-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을 포함한 생활체육시설 조성으로 이미 조성된 종합스포츠타운과의 연계를 통하여 시민 생활체육공간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다.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도 및 지형도면

- 삼척시청 도시과 비치 및 토지이음(www.eum.go.kr) 등재

라. 본 고시와 관계된 서류는 삼척시청 도시과(☎ 033-570-3876)에 비치하며, 일반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삼척시 공고 제2021-950호

# 제229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제229회 삼척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삼척시장

### [부의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2. 삼척시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 위탁 동의안 (자원개발과)
3. 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4.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5. 삼척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6.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삼척시 시세 감면 동의안 (세무과)
7.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
8. 삼척 SOS통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정책과)
9. 삼척시립 원덕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사회복지과)
10. 삼척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
11.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

12. 오십천 선양장 위탁 동의안 (체육과)
13. 삼척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체육과)
14.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체육과)
15. 삼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하수도사업소)
16. 삼척시 분노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수도사업소)
17.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예술센터)
18. 삼척시 해상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양관광센터)

삼척시 공고 제2021 - 955호

### 도계 미인폭포 탐방로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열람(공람) 공고

「도계 미인폭포 탐방로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을 위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붙임2 서식)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8. 24.

삼척시장

#### 1. 지역개발사업구역 개요(사업개요)

- 명 칭 : 도계 미인폭포 탐방로 조성사업
-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산115-2 일원(붙임1 참조)
- 면 적 : 5,360㎡
- 사업기간 : 2021년 ~ 2022년 12월
- 시 행 자 : 삼척시장(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 사업종류 : 지역개발사업(근거법률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 열람(공람) 기간, 장소, 내용

- 기 간 : 2021. 8. 24. ~ 9. 7.
- 장 소 : 삼척시 자원개발과
- 내 용 : 관계서류 열람(공람) 장소 비치(계재 생략)

####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1. 8. 24. ~ 9. 7.
- 제출방법 : 열람(공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자원개발과(033-570-10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붙임 1**

**도계 미인폭포 탐방로 조성사업 편입필지 내역**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공부	편입	
합 계		15필지			5,360	
1	도계읍 심포리	154-1	전	4,096	163	(주)하이원추추파크
2	도계읍 심포리	157-1	답	248	12	(주)하이원추추파크
3	도계읍 심포리	158	답	1,078	56	(주)하이원추추파크
4	도계읍 심포리	223-3	철	14,520	441	국토교통부
5	도계읍 심포리	402-6	천	2,471	37	(주)하이원추추파크
6	도계읍 심포리	산57	임	25,789	264	강O화
7	도계읍 심포리	산57-1	천	26,388	332	국토교통부
8	도계읍 심포리	산58-3	임	2,971	62	(주)하이원추추파크
9	도계읍 심포리	산115-1	임	474,942	141	산림청
10	도계읍 심포리	산115-2	임	267,998	879	산림청
11	도계읍 심포리	산115-18	도	1,388	1,388	기획재정부
12	도계읍 심포리	산115-19	임	3,576	700	산림청
13	도계읍 구사리	산54-1	임	131,189	775	산림청
14	-	0-7	가	-	2	가상지목
15	-	0-9	가	-	108	가상지목

**붙임 2**

**도계 미인폭포 탐방로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서**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의견	
	기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삼척시 공고 제2021-968호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고기간 : 2021.08.25. ~ 2021.09.08 (15일간)
3. 말소(예정)일자 : 2021.09.09.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김억○
	주소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지번 : 강원도 삼척시 노경리 212	
	목조/스레이트 (1층:42.3㎡ 단독주택)	
마.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5. 유의 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8. 25.

# 삼 척 시 장

[별지 제11호 서식]

#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 |        |   |
|--------|---|
| 비<br>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li> <li>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li> <li>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li> </ol> |
|--------|---|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 관리부서

○ 연 락 처 : 033)570-3965



삼척시 공고 제2021-969호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2. 공고기간 : 2021.08.25. ~ 2021.09.08. (15일간)
- 3. 말소(예정)일자 : 2021.09.09.
-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이흥○
	주소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지번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 541	
	목조/스레트 (1층:50.9㎡ 주택, 1층7.6㎡ 잠실)	
마.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8. 25.

# 삼 척 시 장

[별지 제11호 서식]

#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 |     |   |
|-----|---|
| 비 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li> <li>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li> <li>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li> </ol> |
|-----|---|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 관리부서
- 연 락 처 : 033)570-3965

삼척시 공고 제2021-972호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고기간 : 2021.08.25. ~ 2021.09.08. (15일간)
3. 말소(예정)일자 : 2021.09.09.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김상○
	주소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지번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450
		시멘트블럭조/스레이트 (1층:66㎡ 농기계보관창고)
마.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5. 유의 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8. 25.

# 삼 척 시 장

[별지 제11호 서식]

#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 관리부서

○ 연 락 처 : 033)570-3965

삼척시 공고 제2021-975호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08월 26일  
삼척시장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국민편의 중심의 자치민원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른 강원도 자치민원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기준과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민원 처리기간을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및 사망위로금 지급 여부 결정 처리 기간을 (현행) 30일 → (변경) 15일로 변경함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처리기간 변경)

###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0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삼척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5914)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복지정책과
- 전 화 : 033 - 570 - 3314
- 팩 스 : 033 - 570 - 3310
- E-mail : comomm1890@korea.kr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규칙)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1부. 끝.



[붙임 1]

삼척시 조례 제 호

##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훈번호									
<b>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b>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우편번호 : _____  (전화번호 _____)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p>「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_____년 _____월 _____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b>삼척시장 귀하</b>									
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p>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 명예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지급 불가									



[붙임 2]

# 관계 법령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 행정안전부 「국민편의 중심의 자치민원 관리 운영 지침」

### 붙임 2 | 지자체 유사·공통민원 처리기준 표준안

민원명	기 존	표준안
보훈명예수당 신청	<처리기간> 30일, 15일, 7일 등 <구비서류> 3종 - 국가유공자증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처리기간> 15일 이내 <구비서류> 0종 - 국가유공자증 사본, 주민등록등·초본을 공동이용* 등

※ 다만,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처리기준 표준안을 적용하지 못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지자체 특성을 반영해 운영

[붙임 3]

##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 례 안 (시행규칙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근덕면 공고 제2021-22호

### 도로의 지정·공고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240번지 상에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신청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하고자 합니다.

2021년 8월 25일

### 삼척시장

- 도로의 위치 :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240번지
- 도로의 현황 : 길이 : 80.3m, 너비 : 6m, 면적 : 501.0m<sup>2</sup>
-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공부상 면적	제외 면적	지정 면적	
장호리	240	전	3,030	2,529	501	장*두

■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2.12.12>

### 도로관리대장

(2면 중 제1면)

지정번호

대지위치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지번 240
건축주 장 * 두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1965. 08. 06.
도로길이 80.3 m	도로너비 6 m
도로면적 501.0 m <sup>2</sup>	

이해관계인동의서

아래 부분을 「건축법」 제45조에 따른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합니다.  
※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도로로 인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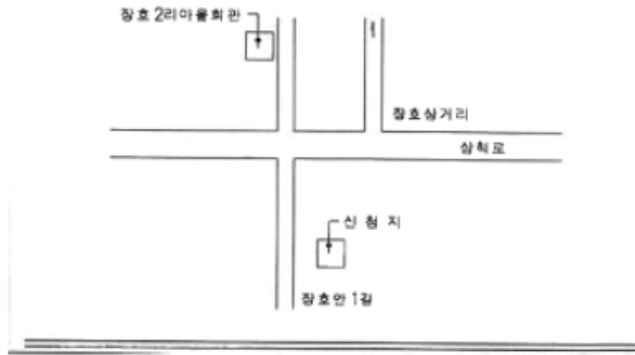
관련지번	동의면적(m <sup>2</sup> )	동의일자	토지소유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240	501	2021.07.07	장*두	1965.08.06	

작성자: 직급 지방시설주사보 성명 유 범 희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급 지방시설주사 성명 박 중 희 (서명 또는 인)

###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 ■ 부근 안내도 축척 :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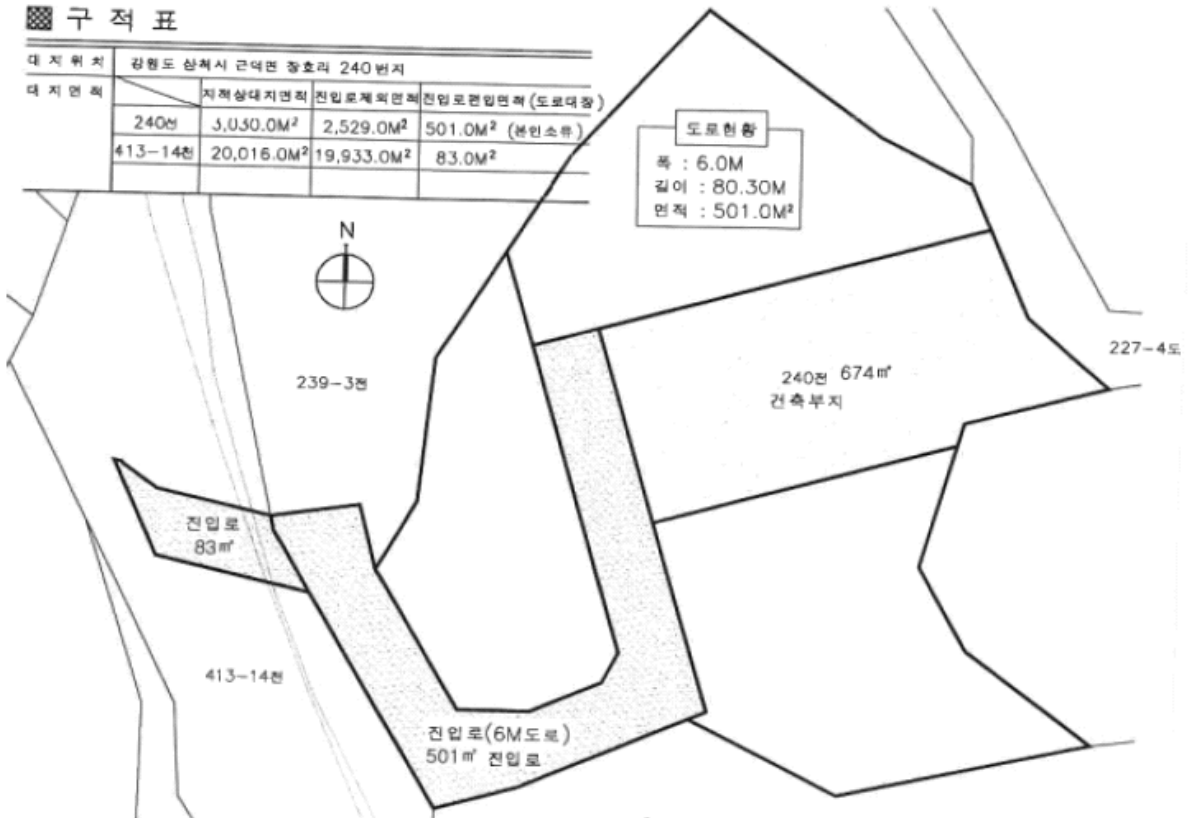


위치도

축척 <임의>

#### ■ 구적표

대지위치	강원도 삼척시 구역면 장호리 240번지		
대지면적	지적상대지면적	전입로계외면적	전입로면적(도로대장)
	240번	3,030.0M <sup>2</sup>	2,529.0M <sup>2</sup>
413-14번	20,016.0M <sup>2</sup>	19,933.0M <sup>2</sup>	501.0M <sup>2</sup> (본인소유)
			83.0M <sup>2</sup>



현황도

축척 [ ] 1/600, [ ] 1/1,200